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6.(금) 10:00 / 배포 2026. 11. 6.(금) 08:30

“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 만에 정비 추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소비자 대상 착취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 전통적 제조업 기반 규제에서 벗어나 환경 변화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①가격남용**, **②사업활동방해**, **③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신설·보완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규율 개선 (개정안 제9조 제1항)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동법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남용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의 취지에 맞게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으로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가격남용 조항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 재정비 (개정안 제9조 제3항)

현행 시행령은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유형으로 ▲원재료 구매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 접근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강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규정 유형들은 **고시에서** 다시 한번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이 구체화**되는 반면, **고시** 규정 유형들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여 집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그간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6건)**에 비해 **고시에 규정된 유형(24건)**의 **집행 실적이 월등히 많아** 현 시행령-고시 체계가 **집행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집행 실적이 많은 **주요 고시 규정 유형**(▲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강제)은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실적이 거의 없는 시행령 규정 유형**(필수인력 채용)은 **고시로 하향**하여 집행 현실에 맞게 유형을 정비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 대부분은 27년 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유형의 남용 행위 등장 등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신유형 남용 행위에 적용 가능한 유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행위'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서는 금지하나 시지남용행위 시행령에는 별도 조항이 없는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독과점 사업자 자신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3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행위' 금지 (개정안 제9조 제6항)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이 부재**하는 **입법 공백** 상태이다.

이에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소비자 착취행위를**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붙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개정방향 요약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5223 * 전자우편: gndud0519@korea.kr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수진 (044-200-4365)
		담당자	사무관	정후영 (044-200-43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하고, 그 가격이 동일 상품·용역의 다른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가격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의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은 경우
<신 설>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의 변동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 또는 유지시키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③ ----------.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삭 제>
<신 설>	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4.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신 설>	5. 자기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에 비하여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신 설>	6.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신 설>	7.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신 설>	8.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그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신 설>	9.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0. ----------제9호--------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도록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2.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현저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붙임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개정방향 요약

시행령 또는 고시 현행안	개정 방향	개정안 조문
[법 제5조①제1호] **가격남용**		
- [신설] 가격을 공급 비용 및 비교시장 가격 대비 상당히 높게 결정	신설	시행령 제9조①제1호
- [시행령 제9조①] 가격을 수급·비용 변동에 비해 상당히 상승·근소하게 하락 또는 유지	개정	시행령 제9조①제2호
[법 제5조①제3호]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 [시행령 제9조③제1호]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 방해	개정	시행령 제9조③제1호
- [시행령 제9조③제2호] 필수인력 채용	하향	고시
- [시행령 제9조③제3호] 필수요소의 접근 제한	유지	시행령 제9조③제2호
- [시행령 제9조③제4호]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고시) 거래거절 또는 수량·내용의 현저한 제한	상향	시행령 제9조③제3호
(고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상향	시행령 제9조③제4호
(고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상향	시행령 제9조③제5호
(고시) 불이익강제	상향	시행령 제9조③제6호
- [신설] 끼워팔기	신설	시행령 제9조③제7호
- [신설] 비공개 정보를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 이용	신설	시행령 제9조③제8호
- [신설] 거래상대방과 소비자 간 거래 방해	신설	시행령 제9조③제9호
- [시행령 제9조③제4호] (고시) 사업자금 대여 후 일시 회수	유지	고시
- [시행령 제9조③제4호] (고시) 사업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해		
- [시행령 제9조③제4호] (고시) 특허 쟁송절차 등 남용		
[법 제5조①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		
- [신설]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또는 상품·용역의 품질 저하	신설	시행령 제9조⑥제1호
- [신설] 소비자의 선택 제약 또는 불이익 제공	신설	시행령 제9조⑥제2호

※ [하향] 시행령 → 고시
[상향] 고시 → 시행령